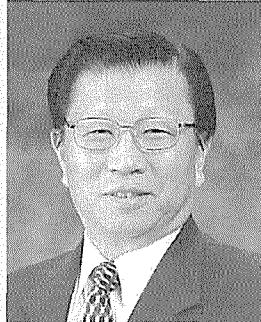


에너지세제 개편에 관한 우리의 의견



이종원

<대한석유협회 회장>

국내 석유제품 원가중
원유도입관련 비용이
약 86%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우리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개편 방향을 지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

리나라는 하루 평균 약 210만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이고, 최근 원유가의 상승으로 올해 석유 수입액만도 2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다소비국이어서 비단 국제유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석유문제만은 항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국내 석유제품 원가중 원유도입관련 비용이 약 86%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에너지 관련 세제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우리업계는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고유가 추세에 대비하고자 석유류 탄력세율의 조정, 정부 비축유 방출 및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단계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석유부존자 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그 대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난 해부터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 석유업계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난해 말 수송용 연료간 세금 격차(LPG 세금은 휘발유의 약 6%수준)로 말미암아 7~10인승 레저용 차량(RV)에 대한 LPG 사용여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관련 부처 및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송용 연료간 가격구조 개선을 포함한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한마디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경제규모에 비해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과 에너지 원단위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실정에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다른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수송 용 연료간의 상대적인 가격 또한 들쭉날쭉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을 합리화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단계적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 우리업계로서는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석유는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연산품 특성에 따라 인위적으로 유종별 생산비율을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번 세제 개편시에 고려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행 석유류 관세 및 수입부과금 제도를 우선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기 위해서 우리 석유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고려되어야 할 우리의 의견을 다음 5가지 사항으로 집약하여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를 비롯한 석유류 관세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OECD 주요국가들은 에너지 수급안정성 확보 및 자국내 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 보완을 위하여 원유 수입시에는 무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석유제품에는 원유대비 최저 2배에서 최고 11배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유와 석유제품에 공히 5%의 관세를 부과하던 우리나라로 양자간 관세차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금년부터 석유제품의 기본 관세율을 8%로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세율 격차는 국제적 기준에 크게 미흡하며, 더구나 뉴라운드 협

원유와 석유제품간
관세차등화를 비롯한
석유류 관세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세차등화와
같은 취지로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도
차등화되어야 한다.

에너지관련 내국세제의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주행세 비중 강화 등으로 에너지 관련 세수 중 석유류 조세부담을 더 늘려서는 안된다. 탄소세 도입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상이 완료될 때까지 석유제품의 실행관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5%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유제품의 관세율은 외국의 차등 관세율 사례 등을 감안하여 원유보다 최소 2.5~3배이상 높은 수준(13~15%)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원간 세제 형평성 차원에서 1%와 1.5%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LNG와 LPG도 석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관세차등화와 같은 취지로 원유와 석유제품간 수입부과금도 차등화되어야 한다.

현재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시 공히 배럴당 1.7달러씩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제도 역시 석유사업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합리성있게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수입부과금 차등화 폭은 양자간 가치비율 차이(‘99년 원유 수입가격은 석유제품의 약 66%수준에 불과)와 현재 양자간 적정한 수준의 관세율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은 원유 보다 약 2.3배 높은 배럴당 3.9달러 수준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LPG와 배럴당 0.6 달러 수준인 LNG도 석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셋째, 에너지관련 내국세제의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수요자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일시적 개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LPG가격 조정(RV차량 문제해결)등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 범세계적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중유 등의 소비는 점차 줄어드는 대신 LNG 등 고급연료의 소비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유에 대한 세제개편은 중유 공급과잉 해소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석유의 연산품 특성등을 고려시 중유 공급과 잉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와 업

계 공동으로 적정한 고도화 시설규모 산정 및 투자재원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주행세 비중 강화 등으로 에너지 관련 세수증 석유류 조세부담을 더 늘려 서는 안된다.

현재 에너지관련 세수증 석유류 비중은 무려 89%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추가로 자동차 보유, 등록세분 등을 에너지세에 전가하게 되면 석유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만일 보유단계 세수증 1조8천억원이 운행단계 세수로 이전 될 경우 주행세 비율은 현재 61.5%에서 7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평균인 57.1% 보다 무려 16.6%p나 높고, 일본의 73.2%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운행단계의 세부담율은 비교적 적정하다고 본다.

다섯째, 탄소세 도입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탄소세 도입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제약하고,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이다. 현재 미국도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북유럽 5개국만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세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2012~2018년 중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를 앞당겨 도입하기보다는 국익차원에서 향후 대외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석유수요의 신장세 둔화와 아울러 에너지원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개편이 우리 석유산업에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에너지 세제개편은 석유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에너지원간 도입비용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작업을 반드시 선행하여 공평무사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에너지 세제개편은 석유
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에너지원간
도입비용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작업을 반드시
선행하여 공평무사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